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가단510956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태

피 고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김명근

2. E

3. F

변론 종결 2019. 3. 12

판결 선고 2019. 5. 21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9㎡, 별지 감정도(3)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50,911,046원 및 2019. 2. 18.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8,688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E, F은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9㎡, 별지 감정도(3)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9㎡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8. 10. 17. 별지 1. 부동산표시 제2항 가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 C은 2003.12. 23. 별지 1. 부동산표시 제2항 나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관하여 2003. 1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원고들 소유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서울시 종로구 G 대 36.4㎡ 및 위 지상 등기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건평 6평(별지 1.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건물)으로 표시된 건물로서 2008.

10. 27.경부터 슬레이트지붕 창고 36㎡로 개조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이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9㎡, 별지 감정도(3)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9㎡ 지상으로 침범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피고 E, F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이 침범한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2008. 5. 18. 부터 2019. 2. 17.까지의 월 임료 합계는 50,911,046원이고, 2019. 2. 17. 기준 월 임료는 408,6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9호증, 을가 제1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 D은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9㎡, 별지 감정도(3)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9㎡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50,911,046원 및 2019. 2. 18. 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8,688원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F은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9㎡, 별지 감정도(3)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9㎡ 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최용호

별지